

17
통일증시

北韓의 人權實相

鄭富洛(統一研修院 教授)

통일연수원

차 례

1. 序 言.....	3
2. 人權의 概念.....	9
3. 國際法上의 人權保障 義務.....	18
4. 法律에 의한 人權侵害.....	22
가. 憲法上의 基本權 制限	24
나. 刑法上의 人權彈壓.....	27
다. 行刑制度上의 人權彈壓.....	42
5. 社會的 統制에 의한 人權彈壓.....	53
가. 不平等한 階級社會.....	53
나. 旅行統制.....	70
다. 言論統制.....	76
라. 宗教彈壓.....	83

6. 強制勞動에 의한 人權侵害	92
가. 勤勞의 義務化	93
나. 強制 労動	95
다. 勞力動員	99
7. 結 言	103

1. 序 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롭고 平等하며, 소중한 생명과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부당한 간섭이나 억압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幸福을 추구할 수 있는 自由와 權利를 가진다. 이와 같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伸張하기 위한 인권운동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엔은 이미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총회에서 ‘世界人權宣言’¹⁾을 채택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國際機構와 協約을 마련하는 등 인권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또, 세계 각국들로 하여금 헌법과 형법 등 실정법을 통해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採擇되었으며 그 내용은 前文과 30個條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유엔회원국 중 찬성 48, 기권 8(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로 의결되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은 이같은 유엔의 인권운동에 부응하여 인권 관련 기구와 그 활동을 保障하며, 헌법·형법 등 각종 법률을 인권보장의 정신에 맞도록 制定, 運用하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의 基本權조항과 權力分立조항을 규정하고 있다.²⁾ 이 뿐 아니라 인권관계의 국제적 협약을 수용, 준수하고 인권단체들의 人權運動을 적극 지원, 협조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國家들 가운데는 自國의 정치이데올로기나 제도상의 특수성을 내세워 국제적인 인권운동을 外面하고, 自國民의 인권을 탄압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사실이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서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우리의 2천만 同胞가 살고 있는 북한 지역에서 유례를 찾아

2) 張明奉, “制度的 側面에서 본 北韓의 基本權”(통일원, 1976), p. 85.

볼 수 없는 最惡의 인권유린 실상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우리의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³⁾

‘아시아워치(Asia Watch)’, ‘미네소타 법률가 국제인권위원회’(약칭 : MLIHRC)⁴⁾ 등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서 지적된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국제인권기구의 조사활동을 거부하고 인권관계의 국제협약을 수용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은 혁명 일변도의 유일폐쇄체제를 강화하는 각종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또 북한 全域에 각종 强

3) 1991년 2월 1일 미국무부가 議會에 제출한 제15차 1990년도 세계인권실태보고서 참조.

4) MLIHRC(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는 1983년에 결성된 인권단체로서 그 회원은 현재 700명 정도이며, Asia Watch는 1985년에 결성된 유엔산하 아시아 지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지아, 네팔, 필리핀, 싱가폴, 스리랑카, 대만 등)의 인권기구이다.

制勞動收容所⁵⁾들을 설치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전체 주민들을 강제 集團勞役에 동원하고 있다.⁶⁾

북한의 헌법이나 형법, 남녀평등권법령 등 모든 법률들은 이른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⁷⁾로써,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마련, 운용되고 있다. 즉, 金父子세습체제에 순응하지 않거나 강제노역에 대해 불평하는 경우에는 소위 ‘反革命’, ‘反國家’라는 죄목으로 처벌하며 이들의 대부분을 각종 수용소에 격리수용하고 강제노역에 처한다. 그 대상자는 무려 15만 2천여명⁸⁾에 이른다.

셋째, 북한은 주민들에게 유일사상인 ‘김일성

5) 북한은 범법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교도소’나 ‘형무소’라 하지 않고 ‘교화소’ 또는 ‘교양소’ 등으로 호칭하며 또 범법자를 ‘수감’한다고 하지 않고 ‘수용’한다고 표현한다.

6) 북한은 수용소에 있는 모든 범법자들에게 숙식문제를 자급자족하도록 하며 강제노역을 시킨다.

7) 金圭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 法と 司法制度」, 1985, p.245.

8) 통일원, 北韓概要('91), p.244.

주체사상⁹⁾ 위주의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외부의 모든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체제에 대해 무조건 순종하는 인간으로 교양한다. 金父子를 우상화하고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의 현상에 만족할 것을 강요한다. 이른바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믿게 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간 본연의 價值觀을 소외 ‘부르죠아 반동사상’이라고 매도, 비판하면서 오직 全體主義·集團主義 의식만을 주입한다. 넷째, 북한은 모든 주민들을 思想性分에 따라 ‘3계층 51부류’¹⁰⁾로 구분하고 차별대우하는 등 엄격한 身分社會, 철저한 不平等社會로 통제·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사회의 人權實相이 어느 누구도 쉽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른바 ‘凍土의 王國’, ‘收容所群島’라고 비판한다.

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1982) 참조.

10) 통일원, 앞의 책, pp. 236–239.

그렇다면 이러한 人權侵害의 근본요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敵對視하고 공산주의 혁명관을 신봉케 하며 김일성부자의 世襲體制를 뒷받침하는 각종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데에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북한의 人權實相을 지적한 모든 자료들은 特殊閉鎖體制인 북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북한에서 탈출한 망명자들의 證言과 간헐적으로 노출된 극히 제한적인 자료에 입각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 내용상의 일부 오류나 단편적인 사항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솔직히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本 教材 역시, 1991년에 발간된 ‘北韓의 人權實態’의 내용을 보완했다고는 하나 자료의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실상을 지적하는 데는 많은 부문에서 미흡함을 자인하면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면 계

속 보완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두고자 한다.

2. 人權의 概念

‘人權’이란, 사람이 人間으로서 享有하는 自由와 權利를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가지는 天賦的 權利와, 國家의 主人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國民으로서의 資格과 權利를 말한다.

이와 같은 人權概念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환경, 그리고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다소 見解의 차이는 있으나 오늘날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특히, 인간은 인간답게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으며, 이같은 자유와 권리를 어느 누구도 침해 하지도 억제할 수도 없다.

둘째, 인간은 자신과 가족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보호받고 創意力を 발휘하여 스스로의 理想

을 추구할 수 있다.

셋째, 인간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主權을 행사하고 社會正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간의 권리에 관한 법률적·제도적 保障 및 그 實踐을 위한 노력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인류 역사상 東西古今을 통해 수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存在價值를 높이 평가해 왔으나, 인간의 권리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기 시작한 것은 근세 自然法思想과 啓蒙主義思想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인간의 권리를 실제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자유 민주주의사상에 기초하며 이는 헌법을 제정하고, 그 내용에 국민의 권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는 기본권조항과 권리분립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은 1776년 미국의 ‘獨立宣言’¹¹⁾과 1791년 프랑스의 ‘人權宣言’¹²⁾이다.

프랑스의 人權宣言에 明示된 인권개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 1 조, “인간은 나면서부터 언제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에 입각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

제 2 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 · 불멸적 권리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 이 권리は 自由 · 財產 · 安全 및 壓制에 대한 반향이다.”

제 3 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국민이다. 여하한 개인이나 단체도 분명히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11) 미국의 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은 1776.7.4. 영국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자주독립을 주장한 것이다.

12) 프랑스인권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1789.8.26. 발표된 것이며 전문 17조로 구성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이다. 이 선언의 제 1 조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가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인권을 법률로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1791년 프랑스의 헌법이며 여기서 인간의 권리를 헌법상의 基本權條項으로 規定한 것이다. 그후 세계 각국의 헌법은 기본권조항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 헌법 학계에서는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이나, 미국의 독립선언문 그리고 근대 민주국가의 헌법을 이른바 ‘自由의 技術(technique de La liberte)’¹³⁾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를 선언문이나 헌법상 기본권조항으로 단순히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①국민주권의 원칙 ②기본권 보장의 원칙 ③권력분립의 원칙¹⁴⁾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편성하고, 또 형법 등 실정법을 인권보장의 정신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적인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

13) 韓泰淵, “憲法學”(法文社, 1985), p.3.

14) 金哲洙, “憲法學概論”(法文社, 1973), p.31.

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기본권보장 방법이 구체화된 것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27가지의 권리보장 사항으로 된 ‘世界人權宣言’이며 그 노력이 국제적 인권운동으로 확산, 보편적 추세로 되면서부터이다.

유엔의 ‘世界人權宣言’에 명시된 인간의 권리에 관한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天賦的으로 理性과 良心을 가지며 서로 兄弟愛의 情으로 행동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種族, 피부색, 성별, 언어, 宗教, 政治的 理念, 민족적 혹은 사회적 出身, 財產, 家門 혹은 기타의 地位 여하로 인하여 하등의 差別을 받음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유엔 공보국이 펴낸 ‘인권–인권에 관한 50문답과 인권신장을 위한 유엔의 활동(HUMAN RIGHTS–50 questions and answers about human

rights and United Nation's activities to promote them)'에서 定義하는 인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인간에게는 知性과 良心이라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므로 생물학적 욕구 이외에도 정신적 욕구를 느끼게 된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난 이상 특별한 능력을 開發, 活用하고 정신적인 욕구를 흡족하게 채우는 것을 가능케 하는 삶의 必須要件이 人權이다.”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인간이 생물학적인 욕구 이외에 심리적인 욕구 즉, 지성과 양심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치를 추구하려는 이성적인 욕구가 보다 더 갈망된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며 이러한 정신적인 욕구 충족의 권리를 바로 인권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인간의 권리에 관한 개념을 자유 민주국가와 다르게 정의하고, 또 헌법이나 형법 등 각종 실정법상의 인간의 권리 및 그 보장방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宣傳媒體들은 인간의 권리를 개인의 권리로 보지 않고 集團主義原則에 따라

프롤레타리아계급집단의 권리, 社會主義的 人間의 권리 등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북한이 비록 헌법¹⁵⁾상 基本權 條項이라는 것을 규정해 놓았다고는 하나 그 대상은 개개인이 아닌 全體住民이며, 그 권리와 의무의 내용 또한 전체주민의 집단을 前提로 한 것이다. 즉, 북한의 헌법 제4장은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들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대상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同法 제49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同法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權力分立, 國民主權, 基本權保障이라는 자유 민주국가의 헌법정신과는 달리 오히려 권력을 집중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한다는 규정을 둘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은 근본적으로 배제되고 기본권을 탄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강화되고 있다.

15) 북한은 헌법을 1948. 8. 25. 제정하였고, 현행 헌법은 1972. 12. 27.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이며 전문 11장, 149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헌법을 민주국가의 헌법과 구분하여 이를바 ‘專制의 技術(technique de l’ autorite)’이라고 한다.¹⁶⁾

사실상, 북한은 인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바 “착취와 억압이 청산된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인권이 보장된다.”¹⁷⁾라고, 그리고 國際人權團體에서 북한의 인권탄압실상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 북한의 宣傳媒體는 “사회주의를 파괴하려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역설하고, 인권이니 자유니 하는 것은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적 선전’이며 북한을 開放化하고 체제를 붕괴시켜 ‘흡수통일’하려는 남한의 선전이라고 비난한다.¹⁸⁾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은, 오히려 북한에는 인권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것

16) 韓泰淵, 앞의 책, p.4.

17) 정치용어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0), p.718.

18) 1990.5.24.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 김일성 연설 및 1991.10.17. 북한선전자료 참조.

이며 人權問題가 거론되는 자체가 체제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헌법 제50조 등에서 당분간은 인권을 부정한다는 사실을 솔직히 表明하고 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물질이 풍부해 질 때 비로소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革命課業이 완수되기 이전의 북한에서는 ‘인권’을 거론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⁹⁾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독재체제를 비판하지 않고 단순히 인권실상만을 문제시하는 것은 악마를 그냥 두고 그의 발톱만 허물잡는 것과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19) 韓泰淵, 앞의 책, p. 35. 및 북한헌법 제50조 참조.

3. 國際法上의 人權保障 義務

2차대전 직후 유엔은 전쟁의 공포로부터 인류를 解放하고 지구상에 평화와 복지를 具現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 이와 함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제 3 차 유엔총회에서 ‘世界人權宣言’을 만장일치로 채택 · 선포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인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인권에 관한 국제기구와 협약을 다양하게 형성하고 각국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인권을 保障하도록 유도하는 人權運動을 강력하게 펼쳐 왔다. 그후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유엔총회에서 ‘國際人權規約’을 채택했다. 이 규약은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제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시민적 ·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그리고 ‘B규약에 관한 선택 의정서’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1976년부터 效力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특히 同 인권규약의 B규약 제40조는 가입된 각

국들이 ①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自由와 平等에 관한 모든 권리를 遵守하고, 이의 實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② 자국의 人權狀況 報告書를 매년 정기적으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③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단의 방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다.²⁰⁾

이와 관련, 同 인권규약을 수용한 각국들은 매년 자국의 인권실태를 유엔에 보고하고 또 유엔 인권조사단의 활동을 支援·協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으로는 ‘전쟁희생자를 위한 제네바 협정’,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금지협정’, ‘강제노동규정의 철폐에 관한 협정’,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금지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²¹⁾

유엔은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하며 각국 내에서 실제로

20) 국제인권보, 1991. 8. 15. 2면 및 북한의 인권백서, p.9.

21) MLIHRC-Asia Watch, “Human Rights in the North Korea”, 1988, p.24.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와 인권실태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거나, 직접 인권단체들로 하여금 인권에 관한 실상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에서는 上記와 같은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인권실태에 관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국제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평화와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유엔의 노력, 인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인권운동에 적극 부응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은 국제인권운동을 계속 외면함으로써 국제법상 인권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國際人權團體들의 지적에 의하면, 북한은 국제인권기구나 협약 중 극히 일부만 수용하고 있으며 또 수용한 국제인권협약을 遵守하지도 않고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전쟁희생자를 위한 제네바 협정’을 수용했으며 그 외의 다른 어떠한 협약도 수용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수

용한 국제적 협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들이 요구하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한 資料, 情報를 提供하지 않는 등 국제인권운동에 대해 일체 협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북한주민들에게 유엔이 ‘世界人權宣言’을 발표했고 인권운동을 展開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北韓住民들은 인권 그 자체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엄격한 統制政策으로 인권에 관한 자료·정보의 일체를 은폐한다. 국제인권단체에서 북한의 인권실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방문을 신청하면 북한은 거절해 왔다. 심지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어떠한 외국인들도 자유로운 여행을 제한받음은 물론 주민들과의 면담이나 접촉마저 엄격히 통제받고 있다.²²⁾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外國人이나 國際人權團體가 북한의 인권에 관한 자료·정보를 수집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22) MLIHRC, 같은 책 참조.

4. 法律에 의한 人權侵害

일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법률을 人間中心으로 제정한다. 다시 말해서 법은 인간의 權益을 존중하는 人道主義精神, 人權保障精神에 입각하여 마련되고 運用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특수한 이념과 체제하에서는 법률을 政治的 手段으로 간주하여 정치목적에 따라 인간을 組織하고 動員하기 위해 법을 제정, 운용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김일성 유일사상, 유일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법률 역시 이를 위한 道具로 되어 있다.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의 教示와 노동당의 規約·綱領이 最上位의 地位에 있고 그 아래에 헌법 등 각종 법률이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의 유일적 지도정당인 ‘조선로동당 規約’과 소위 ‘사회주의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明示되어 있다.

上記의 노동당 규약²³⁾ 前文에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 사상에 의하여 지도된다.”라고 規定되어 있고 북한의 헌법²⁴⁾ 제 4 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 북한은 법의 개념과 역할이 黨의 정책을 관철하고, 인간을 黨의 정책에 순종토록 촉진하는 압력의 수단이라고 역설한다.

즉, 1988년 12월 27일자 「로동신문」은 “국가의 법을 잘 지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빛내자”라는 제목하의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하나의

23) 1980. 10. 제 6 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규약

24) 1972. 12.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 5 기 1차에서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

법조항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실무적 문제인 것 이 아니라 당과 국가, 사회주의 제도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가슴깊이 깨닫고 법을 존중하는 입장과 관점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국가의 법을 지키는 사업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 것만큼 법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말로서는 아무리 당과 국가와 인민을 위한다고 하여도 사실상 당과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바로, 법률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며 나아가 법의 主體도 人民이 아닌 勞動黨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하겠다.

가. 憲法上의 基本權 制限

북한은 헌법상 기본권의 대상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4장은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서 ‘公民’이라는 특수한 用語를 사용하여 公民權 즉, 基本權의 대상을 구별한다. 즉 ‘公民’의 범주에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는 대상자들이 제외된다. 이른바 형벌에 의한 범죄자, 정치사상적으로 소위 ‘혁명투쟁에서 타도의 대상이 되는 정치사상범’에게는 公民權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政治思想犯이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자 이외에 과거의 정치적 숙청자(地主, 資本家, 反動知識人 등)나 金父子 世襲體制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精神病者로 취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공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체제를 옹호하고 당과 수령의 명령에 복종하여 革命과 建設에 忠誠만을 바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의무’의 개념과 혼돈시켜 놓고 있다.

우선,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사회주의 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북한 헌법 제49조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해 놓았다.

또 同法 제68조에는 “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라고 충성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또 同法 제69조에는 “로동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勞動을 權利로 보지 않고 義務로 간주하였고, 또 규정된 일정한 시간(1일 8시간)은 무조건 노동해야 할 의무를 명시해 놓았다.

그 외에도 체제에 대해 충성하고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배제할 의무도 포함시켜 놓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同法 제68조에 “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해야 할 의무와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同法 제54조는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명시해 놓았고, 同法 제70조에 “공민은 온갖 탐오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조항이며 동 제71조는 “공민은 제국주의 자들과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분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기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同法 제18조는 개인의 경제소유권을 박탈하는 조항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라고 규정하여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의 자유와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법적 근거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민들은 개개인이 스스로 인간답게, 보다 윤택한 생활 환경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없어졌고, 그 대신 당과 국가에 생존권을 빼앗긴 채, 자신들의 운명이 예속화된 노예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

나. 刑法上의 人權彈壓

유엔은 ‘世界人權宣言’에서 人身의 自由 즉,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권사항임을闡明하고, 이것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국의 刑事制度가 마련되어야 함을 선언했다. 이뿐 아니라 公權力 등에 의하여 人身의 자유가 침해당했을 경우, 변호인 선임 및 보상청구 등 법률적 救濟措置가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모든 자유민주국가는 人身의 自由를 가장 소중하게 취급하고, 이것이 침해받지 않도록 法治主義原理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世界人權宣言 제3조는 身體의 自由와 관련,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사람은 누구에게나 生命과 身體의 自由가 있으며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지킬 權利가 있으며(同宣言 제3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同宣言 제9조). 만약,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을 시는 法廷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同宣言 제8조, 제10조, 제11조).

이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구제 방

식으로 항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인간들이 질병과 무지, 특수 이념과 권력집단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는 오히려 公權力 즉, 반인권적인 형법에 의해 인신의 자유가 공공연하게 침해되고 있는가 하면, 형법은 있으나 그 상위의 권력 등 초법률적 명령과 교시 등으로 불법·부당하게 인권이 가혹하게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유엔은 인권관련 단체들을 통하여 이같은 각국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등 반인권적 요소들을 剔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 北韓刑法의 反人權的 內容

북한의 형법²⁵⁾은 개인의 生命과 身體를 所重히 하고 保護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이념

25) 북한의 형법은 소련의 스탈린 독재하의 형법체계를 모방하여 1950.3. 제정한 것이며 1974.12. 김일성 1인독재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편하여 1975.2.1. 자로 시행하고 있다.

과 노동당일당독재체제를 강화하고 혁명노선과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주민을 統制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의 刑事政策을 설명하는 각종 자료와 刑法條項들에서 잘 立證된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간한 ‘정치용어사전’(p. 662)에는 북한 형법에 관하여 “공화국 형법은 지주·자본가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이다. 공화국 형법은 국가의 주권과 사회주의 전취물을 보위 한다.

공화국 형법은 당의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찰하여 ‘敵我’를 옳게 갈라내며, 적대계급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락후한 사상잔재를 버리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범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는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刑法이 理念과 制度를 위해 存在하며, 형법의 적용대상이 공산주의 혁명투쟁에 방해되는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북한의 형법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

간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一罰百戒式으로 공포분위기를 造成하여 체제에 挑戰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억제하는 체제수호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정치적 해석의 근거는 바로 북한의 형법에서 더 구체화되어 있다. 북한은 1950년에 소련 스탈린독재정권의 형법체계를 모방한 ‘형사법’(총23장 301개조항)을 制定한 이후 1974년 12 월에 改正(총17장 215개조항)하고 이를 1975년 2 월부터 시행해 왔다. 그런데 1987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으로 다시 이를 개정한 바 있으나 법률상 요건인 主席이 ‘공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²⁶⁾

따라서 현행 북한의 형법은 1975년 2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여기에 나타난 刑法의 특

26) 1987. 2. 5.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2 호’로 채택한 것이나, 주석이 공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이 개정형법의 실용여부는 불확실하다.

징은 다음과 같다. 同法 제 4 조는 형법의 ‘임무’에 대해 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김일성)을 보위하고, ②공화국정부의 혁명로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며, ③모든 범죄적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④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온 사회를 주체사상(김일성주의)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함에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바로 刑法이 金日成과 1黨獨裁體制를 유지·강화하며 이에 반대되는 것과 鬪爭하는 ‘體制守護法’임을 強調한 것이다. 이는 또 북한의 조총련계 법률가들의 저서에서도 확인된다.²⁷⁾ 물론 1987년 2월에 改正했다는 刑法 제 1 조에서도 “공화국 형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며”라고 규정, 體制守護의 법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同法은 제 3 장 ‘반국가 범죄’에는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제 1 절)와

27) 김규승,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 法と 司法制度」, 1985, p.190. 및 북한연구소, “북한형법의 실상”, 1990, p.29.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한 자는 최고형인 死刑과 全財產沒收刑 등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개정 이전의 刑法에 비하여 이번 형법은 혁명성이 변질된 듯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결국 南韓을 植民地로 罢倒하면서 소위 ‘해방운동’, ‘혁명투쟁’ 운운하는 바 기존의 革命性을 그대로 内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도 人間의 生命과 財產을 保護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투쟁을 독려하고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 기능이라 하겠다.

그리고 북한형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刑法은 法治主義의 原理를 무시함으로써 非民主的이다.

첫째, 罪刑法定主義를 배제하고 유추해석한다.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규정할 때는 명확한 법조항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北韓 刑法(1987년 개정) 제10조에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라고 규정하여 類推解釋을 原則으로

한다. 이같은 法解釋 論理는 1975년 2월에 개정, 시행한 刑法 제15조에도 規定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刑法條文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개념적,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법을 解釋, 審判하는 검찰, 재판관 등이 임의로 확대, 과장 해석할 위험성이 尚存하며 이들의 편의해석에 의한 인권침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刑法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同法의 제45조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하여 테러행위를 감행한 자는 사형”, 제52조,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우리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 박해하였거나,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사형”, 제72조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우거나 국가계획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하는 행위를 여러번하여, 인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 큰 혼란을 준 자”, 제78조 “제품규격을 어겨 오작품 또는 불합격품을 생산하여, 국가에 엄중한 손해를 준 자”,

제80조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준 자”, “환자에 대한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약품을 잘못주어 건강에 큰 장애를 준 경우”에 처벌한다는 것 등이다.

둘째, 刑罰 遷及效를 認定한다.

“犯罪와 刑罰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한다.”는 원칙은 법의 安定性을 고려하고 법에 의한 人權侵害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民主國家의 엄격한 法律精神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와 다르다. 비록 형법상으로는 行爲時의 刑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제 8 조), 政治思想犯에 대해서는 遷及效를 認定, 언제든지 처벌한다는 條項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한 刑法條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同法 제 5 조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죄”는 그가 죄를 뉘우치지 않을 시는 언제든지 처벌토록 규정했고, 同法 제 2 절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는 항상 처벌한다.”는 규정들이다.

셋째, 令狀制度가 排除된다.

‘身體의 自由, 住居 不可侵의 權利’는 민주국가의 法精神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의 刑事法에는 令狀制度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인명이 영장 없이 逮捕, 拘禁되었으며 社會安全部, 國家保衛部 등 정치사찰기관이 임의대로 주민들의 가택을 점검, 조사하고 있다.

國際人權團體들이 조사·보고한 데 따르면 북한에서 인명을 無故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넷째, 가혹한 刑罰에 의해 인권이 侵害된다. 法治國家에서는 犯罪에 대한 처벌을 매우 신중하게 한다. 즉 범죄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형벌로 대처한다.

그러나 북한의 형법은 교육적 차원에서 一罰百戒로 최고 중형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범에 대한 처벌은 그야말로 무자비하다.

즉, ① 死刑과 全財產(소비품과 금전 등)을 没收하는 등 極刑으로 처벌하는 대상이 광범위하다. 체제전복음모죄(同法 제44조), 남한이나

외국으로 잠입탈출한 죄(同法 제47조), 혁명투쟁(북한식 통일론 선전선동)의 탄압 및 민족반역죄(同法 제52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 사형이 아닌 여타의 징역형 罪囚는 모두 다 強制勞動(노동교화형)으로 고통을 준다.

③ 이와 같은 처벌 이외에 政治犯과 重懲役刑(5년 이상 정도)를 마친 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격리 수용, 特別獨裁를 실시한다.

(2) 裁判 및 行刑上의 非民主性

북한의 司法權은 분리·독립되지 않고 行政機關의 일부로 되어 있다. 즉, 司法檢察機關은 중앙인민위원회의 소속기관이며 그의 指導·監督下에서 업무가 추진된다.(헌법 제142조)

중앙에는 主席이 이끄는 ‘中央人民委員會’의 산하에 ‘中央裁判所’와 ‘중앙검찰소’가 있고 지방에는 各 道·直轄市와 市·郡에 재판소와 검찰소가 있으며 軍에 特別裁判所가 있다. 이들 각급 재판소는 모두 다 해당 行政單位의 ‘人民委員會’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각급 재판소의構成員은 각급 기관에 해당되는人民會議에서選舉한 ‘判事’와 ‘人民參審員’들로 조직된다. 이들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즉, 中央裁判所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最高人民會議에서 선거하며 道·直轄市 判事는 도·직할시 인민회의, 市·郡 判事는 시·군인민회의에서 각각 선거한다.

그리고 또 재판업무는 당과 행정기관 이외에도 ‘法務生活指導委員會’²⁸⁾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 재판의獨自性이 없다.

裁判過程에서 피고인은 변호인²⁹⁾의 도움을 받을

28) 1977. 12. 15.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과 각 도·시·군·구역에 설치된 것으로 ‘주석’의 직접 지휘 하에서 사법·검찰업무 등 법무생활전반을 지도·감독한다.

29) 북한은 1947. 2. 7.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79호 “변호사회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으며 1948. 11. 1. 「내각 결정」 제59호로 이를 개정, 지금의 “변호사회에 관한 규정”(전문 3장 20조, 부칙)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변호사회는 재판소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이며 평양에 중앙위원회를 두고 도·시·군·구역에 분회를 설치하고 있다. 변호사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은폐된 범죄행위나 ‘반인민적 행위’를 해당기관에 신속히 알리는 일을 한다.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변호인은 국가에서 指定한 변호인이며, 그 변호인은 일정한 월급으로 고용된 직업인이며, 그의 역할은 법률을 정치적으로 교육·설득하는 것이며 피고의 신변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재판은 國家의 政治目的에 따라 실시되고, 그 과정은 2중, 3중으로 중첩된 국가의 감시·감독하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刑事裁判의 경우, 人間의 權利와 自由는 保護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북한의 재판과정은 법률을 초월하여 權力機關의 임의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가장 큰 인권침해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어떤 경우는 正當한 裁判節次도 없이 迅速하게 진행하기도 하며, 재판 그 자체를 非公開裡에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에서 빈번히 지적되고 있다.³⁰⁾

30) MLIHRC, 앞의 책, p.91.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자료들에 의하면, 북한의 비인간적인 숙청과정은 다음과 같다.

北韓 共產政權樹立 이후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金日成獨裁權力 기반구축 과정에서 그의 政敵으로 몰려 억울하게 處刑된 政治人們과 그의 家族은 무려 9,000여 명에 이르며, 이들 중 대부분이 이른바 ‘반당종파분자’ 또는 ‘유해분자’라는 죄목으로 소위 ‘인민재판’을 받고 集團處刑되었고, 그 나머지는 가족들과 함께 ‘특별독재 대상구역’이라는 곳에 격리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처형방식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그 한 예로서 1965년에 있었다는 인민재판 사실이 귀순자의 증언에서 확인되었다. 즉, 함흥시 반룡산 골짜기에서 ‘함흥 사범전문학교’의 한 여학생이 ‘성풍기문란’이라는 죄명으로 약 20,000여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인민재판을 받고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당했다고 한다. 북한의 군대에서는 인민재판의 일종인 소위 ‘동지심판’을 진행한다. 군부대 내에 사병의 애인등 여인이 면회를 오게 되면 그 당사자 병사는 부대

내에서 ‘군기문란’이라는 죄목으로 대중의 집중적인 비판을 당한 후 ‘노동연대’에 배속되고, 重勞動으로 賠罪해야 한다.³¹⁾

그리고 지난 1980년에는 ‘무역부’ 소속의 직원 5명은 어느 외국인이 비행기표를 구입해 달라고 맡긴 금액의 일부를 流用한 죄로 그 중 1명은 총살되었고 나머지 4명은 政治犯收容所로 추방되었다.³²⁾

특히 북한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술인 15~20명씩으로 구성되는 ‘특수 테러조직’을 두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해 왔다. 이 같은 특수 테러조직이 자행한 각종 테러사건 중, 내부의 것은 쉽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제적인 테러행위는 빈번하게 나타났다.

북한이 감행한 대표적인 국제테러로는 1983년에 우리 정부의 外交使節團을 희생시킨 ‘비마 아웅산 폭파사건’과 1987년에 무고한 노동자 175명

31) 남북문제연구소, 북한인권의 허와 실, 1991, p.96.

32) 남북문제연구소, 같은 책, p.95.

을 희생시킨 ‘KAL기 공중폭파사건’이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자행된 사건으로는 부수상 ‘남일’을 살해한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는 1975년의 어느 날, 차량통행이 드문 평양–남포간 도로에서 의문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했다는 사건이다. 이 외에도 북한의 특수 테러조직에 의해 무고한 인명들이 희생된 사건이 많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고 있다.³³⁾

다. 行刑制度上의 人權彈壓

(1) 一般行刑施設과 強制勞動

북한에서는 누구든지 犯法者로 취급되면 형법상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内閣決定 제14호 및 제24호에 의하여 모든 在所者들에게 自給自足할 것을 결정하였고, 또 힘들고 위험한 노역장에는 이들 재소자들로 하여금 노동교육차원에서 참여시키고 있다.

33) MLIHRC, 앞의 책, pp. 90–93.

〈표 : 범법자 수용 시설 현황〉

구 분	위 치	규모 및 수용실태
구호소 (유치장)	시·군별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범죄 및 김일성에 대한 불경죄를 저지른 자 ○ 약 15,000명
69호 노동교화소 (갱생원)	시·군별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200명 수용 ○ 노동을 계율리한 자 등 ○ 약 30,000명
노동교양소 (강제노동수용소 : 감화원)	전국 12~1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2,500명 수용 ○ 강력범 및 정치범의 가족 ○ 외국망명기도자 ○ 약 53,000명
청소년구호소 (소년원)	도·직할시별 1개소 (평양은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청소년, 학생 ※ 6개월간 중노동
교화소 (교도소)	도별 1개소 2개군당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병동과 유사 ○ 100~200명 수용 ○ 정치사상범(일명 “정신 병자”) - 종교인, 자본주의 지식인 - 체제불만자 ○ 약 15,000명
특별독재대상 구역	전국 12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독재대상구역표 참조 ○ 약 152,000명

※ MLIHRC · Asia Watch, Human Rights in the DPRK

북한의 범법자 收容施設은 유치장(구호소), 69호 노동교화소, 노동교양소, 청소년구호소, 교화소 등이 있다. 이들은 거의 다 刑期가 만료될 때까지 強制勞役을 당하게 된다. 물론 정치사상범으로 지목되면 형기나 재판절차 없이 이른바 ‘특별 독재 대상구역’에서 한평생 징역 생활을 하게 된다.

上記 <표 : 범법자 수용시설현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전지역이 강제노동수용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강제노동은 바로 북한 당국이 정책적으로 강화시키기 때문에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그리고 國際人權團體의 報告書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이들의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즉, 이들은 하루 300g(일반노동자의 $\frac{1}{2}$)의 식량과, 협소하고 누추한 집(토담집, 가건물)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며 의복(1년에 노동복 1벌), 의약 품의 공급이 부실하여 허기와 추위 그리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연명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시간은 북한의 法定勤勞時間 8시간

(헌법, 노동법)과는 무관하게 매일 10시간, 20시간으로 無制限이다.

물론, 이들에게는 감시자들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 즉 폭언·폭행 등에 의한 고통이 함께 하며 가족의 면회는 고사하고 사식이나 서신연락마저 금지된 가운데 암흑 속에서 기약 없이 지내고 있다.

(2) 政治犯과 特別獨裁對象區域

북한에는 정치사상범들을 일반주민들과 격리,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소위 ‘특별독재대상구역’³⁴⁾이 있다.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자료나 북한을 탈출해 나온 귀순자들의 증언 그리고 우주관측기재가 촬영한 사진자료 등에서 확인된 이같은 特別區域은 약 12개이며 여기에 收容된 자의 수는 무려 15만2천여명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北韓體制에 順應하지 못하는 자들이나 金日成父子의 世襲獨裁體制에 反抗하는 정적

34) MLIHRC, 앞의 책, pp.119-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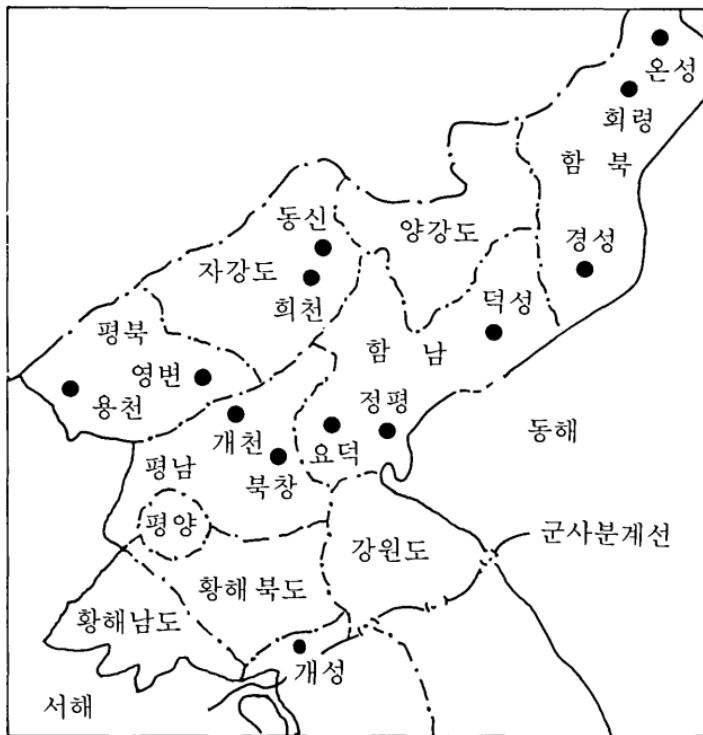
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다. 이들 政治思想犯은 소위 ‘정신병자’니, ‘자본주의·봉건주의의 사상잔재’니, ‘반혁명분자·종파분자’니, ‘반역자’니 하는 罪名을 쓰고 법률상 근거나 형사재판에 의한 주어진 刑期도 없이 무한정 抑留되어 있다.

〈표 : 특별독재대상구역 현황〉

위 치		수용인원
합 북	온성군, 회령군, 경성군	62,000명
합 남	요덕군, 정평군, 덕성군	33,000명
평 북	용천군, 영변군	20,000명
평 남	개천군, 북창군	20,000명
자 강	회천시, 동신군	17,000명

(통일원, 「북한개요」, 1991, p. 246)

〈표 : 특별독재대상구역 위치도〉



上記의 ‘特別裁判對象區域’은 이미 196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으나, 그 규모나 위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 收容所들은 대체로 함경남·북도 등 북쪽지역 山間奥地에 위치하

며, 그 규모는 최대 약 250km²에서 최소 약 50km²이다. 지역별로는 함경북도의 3개군(온성, 경성, 회령)에 위치한 수용소들이 약 215km²~250km²로 가장 큰 규모들이며 여기에 수용된 政治犯의 수만도 약 62,000여 명으로써 전체의 약 $\frac{1}{3}$ 에 이른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特別獨裁對象區域’에 수용된 소위 ‘政治思想犯’은 ‘김 일성 1인독재권력구축’ 기간인 1945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숙청된 民族主義者·宗教人 그리고 土着共產主義者, 소련파, 연안파, 남로당파 등이며 6·25 당시 北韓體制를 반대하고 남한을 지지한 자와 그 가족들이다. 또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金日成父子世襲體制’에 반항, 불평한 자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이 이와 같은 政治犯을 숙청, 격리수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기 때문에 이들 정치범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들 중 이른바 1945년 북한의 공산화과정에서 소련당국의 지시로 북한에 파견된 소위 ‘소련파’

200여 명 중 행방불명된 45명의 명단이 최근 공개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14일 ‘재소고려인유가족후원회’가 이들 중 행방불명된 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생사여부와 소재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우리의 人權聯盟에 要請해 와 확인되었다. (국제인권보 1991. 11. 15. 1면 참조)

〈표 : 행방불명된 전직 고급간부 명단〉

성명	전직	최종 확인
박 창 식	자강도 인민위원장	숙청후 행불
김 열	공업성 부상, 함북도당 위원장	"
김 동 철	최고재판소 부소장	"
이 용 석	농업성 부상	"
김 춘 삼	내무성 부상	"
엄 일	내무성 과장	"
전 일	38선 여단 군사정치부장(김혜경 남편)	숙청후 강제수용소 수감
김 만 석	전시 김일성 근위부대장, 내무성 비밀통신부장·소장	숙청후 행불
최 철 환	내각 사무국장	숙청후 처형(?)

성명	전직	최종 확인
방 춘 걸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 경립부장	숙청후 행불
박 의 완	내각 부수상	숙청후 강제수용소서 타살(?)
박 창 옥	내각 부수상	숙청후 행불
고 히 만	임업상	" " "
김 철 우	군단 정치위원	" " "
장 익 환	교통성 부상	" " "
김 동 학	최고 검찰소 부소장	" 처형(?)
장 주 익	과학원 서기장	숙청후 행불
김 혜 경	여, 인민군 후방국장	숙청 무소식, 평북정배
김 칠 성	해군참모장, 해군소장, 소련영웅칭호받음	" (평북정 배?)
김 용 수	출판지도국장	숙청, 강제수용소 무소 식
박 태 준	노동성 부상	숙청후 행불
허 익	노동당 중앙위원회 직 속 고급당학교장	숙청, 강제수용소 사망 (?)
김 택 영	사법성 부상	숙청후 행불
박 일 영	체코주재대사	" 처형(?)
김 광	무역성 부상	" 행불
최 종 학	인민군 총정치국장, 상 장	사상검토후 지방유배 무소식

성명	전직	최종확인
최원	인민군 소장	사상검토후 무소식
정학준	인민군 포병중장	" 행불
이종인	인민군 통신소장	" "
김원길	항공부참모장, 소장	" "
최홍국	인민군 후방국장, 소장	사상검토후 지방정배 무소식
김원무	인민군 대좌	숙청후 행불
김태건	인민군 항공소장	사상검토후 행불
김철용	인민군 대좌	" "
안철	인민군 대좌	" "
박창원	인민군 소장	" 지방정배
서춘식	평북도당위원장	" 행불
허빈	황해북도 당위원장	" "
박알렉세이	농민은행장	" "
안일	인민군 기관잡지 주필	" "
김창수	네델란드대사관 참사	" "
김철훈	문화기관 간부	" "
김두환	무역성 부장	" "
고봉철	화가	" "
김뽀뜨르	신문사 부주필	" "

(국제인권보 1991. 11. 14)

그 외에도 김일성부자세습체제에 불만을 가진 죄로 숙청된 자는 ·부주석 김동규, 국가보위부장 김병하, 당비서 류장식 등 허다하다.

〈표 : 김정일 등장이후 숙청된 정치범 명단〉

이 름	숙청당시 직책
홍 성룡	부총리
김 경련	부총리
김 병하	국가보위부장
김 동규	부주석
류 장식	당 비서, 남북조절위 부위원장
김 광협	당 비서
허 봉학	대남사업총국장
정 병갑	제 3 집단군사령관
김 양춘	제 7 집단군사령관
김 창봉	민족보위상
박 금철	당 정치국위원
김 도만	당비서

(조선일보, 1989. 1. 18)

이곳에 收容된 정치범의 人權實相은 다음과 같다.

‘8호수용소’(가장 무거운 정치범)에 수용된 자들은 남녀노소별로 집단수용되어 있고, 모든 생계도 옥수수 등 잡곡과 소량의 배급으로 연명하며, 어려운 중노동에 시달리고, 일반 사회와는 달리 질병치료나 건강에 관한 당국의 지원 없이 생명만을 지탱하는 등, 외부와는 일체의 연락도 할 수 없다.

그리고 ‘149호 대상구역’에 수용된 약 70,000여 명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완벽하게 자급 자족해야 한다. 물론 이들에게는 외부와의 통신, 면회, 교육, 치료 등이 금지되고 엄중한 경계망 속에서 수용소를 異脫할 수 없다.

5. 社會的 統制에 의한 人權彈壓

가. 不平等한 階級社會

유엔은 ‘世界人權宣言’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 하며, 성·인종·종교의 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同 宣言 제 1 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同 제 2 조는 “性別 · 人種別 · 宗敎의 差異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同 제 3 조는 “누구든지 법률 앞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국가들은 이와 같은 유엔이 천명한 인간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법률적 · 사회적으로 인간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이와 전혀 다르다. 비록 북한 헌법에는 인간의 평등성을 언급해 놓고 있으나 이 역시 특정계층 중심으로, 즉 정치적으로 적대시하는 사상법을 제외한 오직 ‘革命的 階級’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전체 주민들을 忠誠心, 出身性分 등에 의해 계층 구분하고, 차별대우하는 등 엄격한 階級社會를 구성하고 있다.

(1) 住民階層區分

북한은 전체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일명 기본계층); ‘적대계층’(일명 복잡계층)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계층에 따라 사회적인 처우를 달리 한다.³⁵⁾

〈표 : 주민계층구분 현황〉

(% : 총인구대비)

계 층 별	대상자수	비 고
핵 심 계 층	28% 598만명	○ 혁명투쟁공로자 ○ 6·25전사자 유족 등
동 요 계 층 (기본 계 층)	45% 962만명	○ 소자본가, 농민 ○ 기능공, 일반노동자, 사무원 ○ 귀화인 등
적 대 계 층 (복 잡 계 층)	27% 577만명	○ 8·15이전의 지주, 자본가 ○ 일제관료 ○ 종교인 ○ 반체제선동자 등

(통일원, 「북한개요」, 1991, p. 238)

35) 통일원, 「북한개요(’91년판)」, pp. 235-239.

북한이 주민들을 계층별로 구분하게 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지난 1950년대부터 주민들의 정치·사상성을 조사, 분류해 온 과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 金日成獨裁權力を 구축하는 과정에서 남노당계를 포함, 체제불만세력이나 공산화과정에서 타도의 대상으로 되는 과거의 地主, 資本家, 知識人們을 숙청하거나 격리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8년 12월부터 1960년 12월 사이 소위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면서 김일성독재권력에 도전하는 수많은 정적들을 숙청하였다. 심지어 북한을 공산화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쳐온 연안계, 소련계의 인물들도 차례로 숙청했다. 그리고 나머지의 體制不滿勢力으로 지목된 자들에게 ‘친일파’, ‘봉건 및 자유주의 사상잔재’라고 매도하여 숙청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종교, 지식인들도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숙청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다행히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가족과 함께 집단으로 산간오지에 격리·수용당하게 되었다.

그후 1966년부터 1970년 초반까지는 김일성의 권력을 절대화, 영구화하는 기간으로써 全體住民들을 새삼 思想·性分別로 분류하였다. 즉 ‘주민등록사업’ 등을 실시하고 전체 주민들을 출신성분, 정치적 성향 및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열성 등에 기준하여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각 계층별로 또 다시 51개 부류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金日成父子世襲體制’를 구축하기 시작한 기간이었다. 이 당시는 공민증 검열사업 명목으로 주민들의 신분을 재검토하고 성분별로 재분류했다.

특히 이 기간은 외부의 自由主義思潮를 색출하고 김부자 세습체제를 옹호하는 과정이다. 이때는 외부의 사상조류에 민감한 북송교포들과 6·25를 전후하여 월북한 자 등이 그 주요대상으로 되었다. 이들은 13계층으로 세분화되면서 성분적으

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산·이주되거나 산간오지로 격리·수용되었다.

이와 같이 주민들에게는 정치, 경제, 사회, 문

〈표 : 주민성분 조사사업 현황〉

구 분	시 기	내 용
中央黨集中指導事業	'58. 12. ~ '60. 12.	○不純分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 이주
住民再登錄事業	'66. 4. ~ '67. 3.	○100만 赤衛隊의 무장을 위한 住民成分 분류(직계 3대·처가·외가 6촌 까지 내사)
3階層51個部類區分事業	'67~'70. 6.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核心階層, 動謠階層, 敵對階層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住民了解事業	'72. 2. ~ '74	○南北對話 관련 주민동태 조사·파악, 전주민들을 믿을 수 있는 자와 반신반의자·변절자로 구분
公民證檢閱事業	'80. 1. ~ '80. 12.	○김정일 지시로 公民證 대조 및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 統制機能 강화

구 분	시 기	내 용
外國歸化人 및 越北者 등에 대한了解事業	'80.4. ~ '80.10.	○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 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 분, 監視資料를 체계화
北送在日僑胞 了解事業	'81.1. ~ '81.4.	○ 北送僑胞들에 대한 자료 를 세분하여 동향감시자 료를 정밀화
公民證更新 事業	'83.11. ~ '84.3.	○ 公民證 갱신, 住民文件 정비

(통일원, 「북한개요」, 1991, p.237)

화 등 모든 생활을 差別待遇 했다. 따라서 國際人權團體들이 조사 보고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 사회는 인간차별을 철저히 하고 있는 ‘不平等社會’, ‘階級社會’이다.

북한이 주민들에게 계층별로 차별대우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계층’은 김일성과 그를 추종하는 당·정·군의 지도급 간부들과 소위 혁명투사, 6·25 전상자, 공로자 및 이들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평양 등 생활환경이 비교적 잘 마련된 도시에서 거주하며, 의·식·주 생활에서 우선적

으로 좋은 대우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들은 ‘新興 共產主義 革命家, 貴族階級’이며 選民意識에서 생활한다.

〈표 : 주택 등급별 배정 실태〉

(평양)

區分	住 宅 型	家屋構造	入 住 者
特號	獨立高級住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獨立式 多層 또는 2層 住宅 • 庭園 • 수세식 변소 • 冷溫房裝置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黨 副部長級 以上(차관급) • 政務院 副部長級 以上 • 人民軍 少將級 以上
4號 、 三	新型高層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2개 以上 • 목욕탕 및 수세식 변소 • 배란다, 冷溫水 施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黨 課張級 以上 • 政務院 局長級 以上 • 大學教授 • 人民軍 大佐 • 文藝團體 幹部 • 企業所 責任者
3號	中級單獨住宅 및 新型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2개 • 부엌 •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央機關 指導員 • 道單位 副部長級 • 企業所 部長

區分	住 宅 型	家屋構造	入 住 者
2號	一般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1~2 • 마루방 1, 부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民學校・高等 中學校長 • 一般 勤勞者 • 事務員
1號	集團公營住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1~2, 부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단근로자 및 事 務員
	農村文化住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單層 聯立住宅 • 방2, 부엌1, 창 고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協同農場員
	舊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3개 의 農 村 既存舊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두리 農民

(통일원, 「북한개요」 1991, p. 251)

이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忠誠派는 김일성 일가를 포함한 이른바 ‘붉은 귀족’으로서 그 수는 약 1% 정도이며 이들의 생활은 여느 資本主義 社會의 富豪처럼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북한을 탈출한 망명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북한의 붉은 귀족들의 호화생활상은 다음과

같다.³⁶⁾

이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専用農場’에서 생산되는 식품으로 생활하며 계절에 따라 療養할 수 있는 호화별장을 가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金日成専用別莊이 약 80여 개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의 心身을 즐겁게 하는 예술소조, 일명 ‘기쁨조’, ‘율동조’ 등이 있고 이들은 20세 전후의 미혼자들이며 그 수는 약 3천 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일단 核心階層이라면 住宅에서도 최상 위급으로 우대받는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방 5개 정도의 넓은 ‘특호’주택에서 생활하며(표 : 주택 등급별실태 참조)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놓은 TV, 냉장고, 승용차 등이 있다.³⁷⁾

그런데 북한의 인권실태를 논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대상은 상기의 핵심계층이 아니라 생활형편

36) 남북문제연구소, 앞의 책, p.27.

37) 남북문제연구소, 앞의 책, p.28.

이 열악한 동요계층(기본계층)과 적대계층(복잡계층)이다.

동요계층은 노동자, 농민, 하급사무원, 기술자, 하급당원, 하급군관, 사관장 등이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課業은 어렵고 힘든 노력과 끊임없이 실시되는 政治思想教育이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우는 극히 제한된 주·부식의 배급, 주택배정, 피복의 배급 등이다. 이와 같은 의·식·주생활은 지난 40여년 동안 개선이 없으며 오히려 革命과 建設의 과업만 증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노동의욕을 상실했고, 이로 인한 生產性低下 현상이 深化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삶의 희망을 포기한 自暴自棄狀態에 이른 것이다.

즉, 이들 동요계층에게는 1일 600g~700g의 主食이 지급되나 그 내용은 7할이 옥수수 등 잡곡(평양의 간부급은 7할 이상이 쌀)이며 그것도 ‘節糧運動’, ‘한끼 안 먹기운동’, ‘愛國米운동’이니 하는 명목으로 감량 지급된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劣惡한 대우에서 고통을
겪는 ‘敵對階層’의 생활은 다음과 같다.

‘적대계층’에 속하는 주민의 수는 약 28%,
577만여 명 정도로 推定된다. (표 : 주민계층구분
현황 참조)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식량
배급과 주택배정, 피복배급이 되지만 그것도 배
급의 내용이 質的으로 열악하다.

이들은 生活與件이 나쁜 山間, 벽지이거나 어
촌, 광산 등지에서 생활한다. 이들에게 支給되는
식량은 도시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급하고 남
는 것을 주게 되며 운송시설이 어려운 조건에서
배급이 순조롭지 않은 등 정해진 배급량을 제때
에 받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은 모든 예산을 中
央中心으로 편성, 투자하는 관계로 산간 벽촌에
서 생활하는 3등 주민들의 학교, 주택, 도로 등
을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적대계층이 생활
하는 산간 벽촌에는 주택은 고사하고 학교, 병
원, 도로 등도 건설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생활은 북한에서 가장 疏外되고 劣惡
한 상태이다.

(2) 女性差別

북한은 共產化 初期過程에서 ‘男女平等主義’를 표방하고 여성을 勞動力化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헌법에 남녀평등에 관한 조항을 規定하였고 또 ‘男女平等權 法令’도 制定하였다. 1946년 7월 30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여성을 解放하여 노동현장에 投入하여 이른바 社會主義建設에 참여시킨다는 선전하에서 ‘남녀평등권 법령’을 採擇한 것이다.

그 결과 오늘 북한여성의 家庭과 社會에서의地位와 役割은 오히려 여성의 차별현상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시킨다는 방침과 이른바 ‘家庭의 革命化’라는 정치구호를 標榜하면서 ‘女性의 勞動階級化’를 모색했다.

이상과 같은 ‘여성의 해방’과 ‘가정의 혁명화’, ‘여성의 労動계급화’와 같은 선전들은 결국 북한의 여성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력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의 이같은 政治宣傳이 바로 여성의 노동력

착취에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정치선전 책자에서도 간접 是認했다. 1970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가 發刊한 정치선전 책자 ‘정치용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남녀평등권법의 실시로 수많은 여성들이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어엿한 일군으로 자기의 열성을 바쳐 사업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인력을 더 많이 確保하기 위하여 처녀들의 결혼연령을 延長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일성은 “여성이 한창 일할 나이에 결혼하면 그만큼 혁명과업 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나이 28세가 된 다음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力說했다.³⁸⁾ 이같은 사실은 북한의 家族法에서도 規定되고 있다.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결정’ 제5호로 採擇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 제9조는 결혼연령에 대해 남자 18세,

38) 김일성저작선집(제6권), 평양, 1974, p.14.

여자 17세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 조항에서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라고 규정해 놓았다.

사실상 오늘날 북한여성들은 탄광, 광산, 건설 공사장 등에서 重勞動에 勤員되고 있다.³⁹⁾

그 대신 북한여성의 社會的 地位가 向上되어야 할 것이나 여성의 사회지도자적 위치에 오른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勞動黨의 경우, 당정치국 상무위원회 3인(金日成父子와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에는 여성이 없으며 그 아래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23명(정위원 14명, 후보위원 9명) 중 여성은 1명(이선실) 뿐이다. 비서국 비서 11명 중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다. 그리고 政權機關에도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15명 중 여성이 없고 내각인 政務院에는 총리 이하 부총리 8명과

39) MLIHRC, 앞의 책, pp.147-149.

40개의 部·委員會에는 여성이 단 2명(김복신, 윤기정) 있다. 또 김일성 독재권력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100만여 명의 인민군대에도 지휘관 중 將星級은 모두다 남성들이다.

북한여성은 가정에서도 不利한 대우를 받는다. 이른바 ‘가정의 革命化, 勞動階級化’의 구호하에서 가족중심의 단란한 가정보다는 黨과 首領, 革命과 建設이라는 정치선전을 중요시 해야 한다.

북한은 여성을 폭력 테러의 수단으로 利用한다. 이들에게는 오직 당과 수령에 忠誠하고 소위 ‘革命家’로서 목숨을 바치게 한다. 여성의 테러조직에는 외국인들까지 포함된다.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1970년대 초, 5명의 레바논 여성을 평양에 誘引하여 間諜教育을 시켰으며 1978년에는 홍콩에서 한국인 俳優들을 납치했고 1987년에는 日本女性(이은혜)을 납치, 간첩교육에 이용했고 여기서 교육받은 김현희는 드디어 ‘KAL 858기’를 폭파하여 무고한 노동자들이 희생되었다. 김현희에게 일어교육을 시킨 이 일본 여인(36세, 본명: 다구찌 야예꼬, 별명

: 이은혜, 치도세)은 1978년 일본의 어느 한 해 안에서 납치되었다는 사실이 1991년 5월 16일 공식 발표되었다. 일본 당국에 의하면 다구치 이외에도 13명~14명이 더 북한에 납치됐다고 한다.

북한의 여성은 가정에서는 主婦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사회적으로는 黨의 혁명 과업 수행에 충성하기 위하여 노동현장에서 일해야 한다. 물론 직장여성은 직장여성대로 가정과 직장이라는 2중고통이 따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김일성 부자세습을 위해 사회적으로 前近代的인 家父長制的 봉건인습을 새삼스럽게 강조한다. 따라서 엄격한 家長의 중심으로 구축된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이처럼 북한의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고유가치를 누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단순한 노동자, 혁명가로 변질되었고 그 결과 ‘女性解放’이라는 선전은 전적으로 허구적인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⁴⁰⁾

40) 이태영, 북한여성, 1988. 참조.

나. 旅行統制

북한에서는 주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금지한다. 북한주민들의 여행은 정치사상학습을 위한 金日成生家 등 偶像化 현장을 답사하는 집단적 정치여행과 노동현장에 투입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이동하는 여행이 고작이다.

북한의 헌법에는 旅行의 自由에 관한 조항은 어느 한 구절에서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행을 통제하는 法은 있다.

1975년에 개정된 형법 제299조는 주민들의 여행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의 징역형을 賦課하도록 벌칙을 가해 놓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행을 구체적으로 規制하는 시행세칙을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제57호로 제정했다.⁴¹⁾ 同 ‘결정’ 제57호의 제 3 조는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내

41) 남북문제연구소, 앞의 책, pp.35-39.

각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同 결정’ 제56조에는 “모든 인민들은 가족이 아닌 임시 체류자나 여행자를 숙박시키려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개별적인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여행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運轉手를 선호한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해외교포들의 證言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許可 없이 도·시경계를 벗어나 기차나 버스로 여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여행을 하려면 通行證을 발급 받아서 지참해야 한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이 여행을 하려면, 여행하기 무려 14일 이전에 해당 단위의 직장장에게 여행허가신 청서를 提出하여 일단 직장장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거주지의 시·군 구역의 행정 위원회에서 노력동원사항을 검토받아야 하며, 3 차로 해당지역의 사회안전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기 3일 전에 여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위험분자, 감시대상자 등록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그리

고 나서 地域別 보위부의 종합과에서 動向不純者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한 후에 비로소 여행증이 발급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직장의 초급당비서를 경유하여 여행증이 교부된다.

그리고 여행자가 目的地에 도착하면 그 지역의 人民班長에게 확인받은 후 숙박부에 등록한다. 이같은 숙박부를 사회안전부에 비치된 手配臺帳과 대조한 후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하게 된다.

공무 여행할 경우는 여관주인, 私的인 여행의 경우는 그 지역 인민반장이 관리하는 숙박대장에 인적사항을 기록한 다음 管割分住所地에 신고하고 증명서의 뒷면에 날인하고 숙박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여행절차가 싫어서도 주민들이 여행을 하지 않는다.

특히 북한에는 지방의 주민들이 임의로 갈 수 없는 ‘旅行統制區域’이 있다.

그 대상지역은 평양시 全域 및 그 인접한 郡(평남 대동군, 증산군), 휴전선 및 해안지역(강원도 전역, 황해남도 용연군, 장연군, 옹진군,

강령군, 배천군, 청단군, 평산군, 황해북도의 토산군, 개성시, 장풍군, 개풍군, 판문군) 등이다. 그리고 中·蘇國境地域, 군수공장 밀집지역(자강도 강계시, 진천군, 희천군, 평안북도의 삭주군, 各道 인민위원회 소재지) 등이다.

북한은 외국인에게도 여행을 통제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한 여행금지구역은 북한의 전체면적의 약 40%에 이른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평양에서 출발하여 가볼 수 있는 구간은 6개의 道路網에 불과하다. 이 경우도 基本道路만 通行할 수 있고 그 길 이외에는 가볼 수 없다고 한다.⁴²⁾

外國人の 여행가능 구간인 6개 도로망은 다음과 같다.

- 평양–순천–개천–묘향산
- 평양–원산–통천–금강산
- 평양–개성–판문점

42) 남북문제연구소, 앞의 책, p. 40.

- 평양–숙천–문덕–안주
- 평양–남포
- 평양–중화–사리원 등이다.

주민들의 해외여행은 사실상 不可能하다. 주민들에게는 私的인 용무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한 旅行規定이 없음은 물론, 여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다.

따라서 일반주민들이 관광 등 사사로운 용무로 해외여행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생 등이 해외여행을 한 것은 당국의 경비 부담 등 공무형식의 여행뿐이다.

지난 1970년대부터 실시된 조총련의 ‘北送計劃’에 따라 북한으로 들어간 日本人妻의 경우, 자기들의 母國인 일본으로 여행나온 여성의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이를 중 대부분 사람들의 行方조차 알 수 없다고 일본측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측은 북한과의 修交協商 과정에서 이들의 소식과 日本女人들의 모국방문을 허가해 줄 것을 북측에 누차 요구했다. 일본측의 주장에 따르면 北送者 남편을 따라서 북한에 들어간 일

본여성은 약 1,830명이며 이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무려 6,679명 정도라고 한다. 이 중에는 사망자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학생들의 여행은 특별히 통제된다. 북한 학생들은 金日成 思想學習이나 集團勞動에 동원되기 위해 무리로 이동하는 경우 외에 개인적인 용무, 즉 放學이나 吉·凶事 등을 계기로 친지를 방문하는 일이 극히 어렵다. 이같은, 학생에 대한 여행억제정책은 비록 金正日의 지시로 黨에서 각급 생산현장에 파견되는 청년·학생들로 구성된 ‘3大革命小組員’들에게도 해당된다.

만약 학생이 여행을 하려면, 우선 학교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주지 行政當局에 여행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기간중의 활동사항, 숙식관계 등 一切를 신고해야 한다.⁴³⁾

이처럼 개인의 여행을 강력히 통제하는 곳은 이 地球上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43) 안계춘, “북한주민생활실태조사” (통일원, 1989), pp.69—72.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이같은 비인간적인 통제정책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할 수 없으며 입버릇처럼 “수령님 恩德에 행복하다.”는 소리만 낼 뿐이다.

다. 言論統制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는 “사람은 누구나 見解의 자유와 表現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누구의 干渉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유와 어떤 전달 수단을 통해서거나 또 국경과는 무관하게 情報와 思想을 추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自由民主國家에서 강조되고 있는 언론 자유의 개념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바로 民主化・自由화의 척도가 되며 이같은 언론의 자유가 억압당할 때는 민주화가 불가능하며 인권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오늘의 민주국가들은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하며 법률적 사회적으로 언론을 보호,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국가, 전체주의, 1당독재사회에서는 이같은 언론의 자유를 根本的으로 부정하고 있다. 아니 부정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언론을 政治宣傳의 도구로 이용할 뿐이다. 그런데 이들 獨裁社會에서 마련해 놓은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어서, 마치 이들도 언론의 자유를 重要視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도 헌법 제53조에서 “공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주장하는 언론은 자유민주국가에서 표방하는 人權的 次元의 언론과는 本質面에서 다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북한의 정치교육자료들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한 ‘정치용어 사전’⁴⁴⁾에는 “표현의 자유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44)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546.

철저히 관찰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가일충 강화하며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인민들)을 당과 수령(김일성)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는데 전적으로 복무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表現은 당과 수령을 위한 공공의 정치선전이며, 개인적인 見解나 主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당과 수령을 지지·찬양하며 국가의 정책을 선전하고 주민들을 體制에 順應하고 노동에 참여하도록 선동할 자유이며 자신이나 타인의 행위가 당의 정책에 소극적일 때 이를 비판할 자유라는 의미이다.

이같은 개념은 북한의 법률 및 교육선전자료들에서 確認된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재인 ‘國家法 講座’에서는 “언론의 자유는 비판과 자기비판을 위하여 광범히 리용되면서 그것은 인민의 리익에 상응하여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고 인

민경제를 일충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⁴⁵⁾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出版·報道文에 관해서도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가하에서 선전선동자적, 조직자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에게 맑스·레닌주의를 주입하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⁴⁶⁾ 따라서 북한에서는 당의 정책을 지지·찬동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이에 관한 자신과 남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할 표현의 자유만이 인정된다.

특히 이들 표현의 자유 가운데는 공산주의 革命思想, 金日成唯一思想과 북한의 사회주의제도를 신봉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비판하며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제도를 비난하는 자유를 더 중시한다. 즉, 북한의 정치선전책자 ‘國家社會體制’는 신문, 잡지 등 출판 보도의 임무에 대해서 “인민을 조선로동당과 조국에 무한히 충실하며

45) 평화문제연구소, 북한의 인권백서, 1991, p.67.

46) 평화문제연구소, 같은 책, pp.66-73.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적 국가 사회제도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북한은 言論의 自由를 法律로 통제한다. 1974년 말, 개정된 형법(1975년 2월 시행) 제56조 제1항은 “말이나 동작으로 당과 국가의 정책을 중상, 비방하거나 반동적 사상과 요언(妖言)을 조작, 유포, 전파하는 행위, 반동적인 출판물과 문서를 작성, 보관,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반동적인 낙서나 투서로 간부(金日成父子 등)를 비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사형에 처하고 전 재산을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同法 제122조는 “허가없이 출판물을 인쇄하거나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嚴重한 벌칙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1987년 2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採擇했다는 형법 제46조도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 선동하는 자는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規定하여 체제와 정책을 부정, 비판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이 뿐 아니라 勞動黨의 비서국(선전선동부)이 모든 출판 보도기관을 관장하며 개인소유의 것이 없다. 그리고 모든 선전물을 黨(비서국)과 國家機關(정무원출판총국)이 엄격히 검열, 통제한다.

북한에도 신문, 방송 등 報道媒體가 있으며 주민들은 이를 구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매체들은 노동당에서 정치선전을 위한 사항만을 소개하며, 주민들 개개인의 생활상 특히, 사회저변의日常生活相이나 어두운 면을 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의 TV·라디오 등 선전매체는 다이알을 고정하는 등 수신장치를 조작하였고 3개 월마다 사회안전부에서 이를 점검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임의대로 자유롭게 각국의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더욱이 직장과 마을, 가정에는 아예 有線放送網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黨의 선전선동 내용만을 一方的으로 듣기만 해야 한다.

북한은 외국인에게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 이같은 사실은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에서 指摘

되고 있다.⁴⁷⁾

즉, 북한은 그들의 선전활동에 대한 비판을 反逆行爲로 간주한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베네쥬엘라의 시인이며 번역가인 ‘Ali Lazmeda’를 처벌한 사건이다. 그는 1966년에 정치선전물 翻譯作業을 위해 평양으로 초청되었다. 그는 북한의 선전내용은 信賴性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기호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한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마침내는 간첩죄로 6년 이상 獨房에 감금되었다. 또 1986년 12월, 북한을 방문했던 어느 외국 특파원들이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記事を 보도하자 이를 간첩이니 사기꾼이니 하면서 비난한 바 있다. UPI의 James Miles, AFP의 Pierre-Antoine Donnet 등 기자들은 ‘帝國主義의 나팔수’라고 비난받았다. 특히, Donnet 기자는 북경에서 보낸 回信에서 북한 관리들과의 모든 面談

47) 金日成 綜合大學 國家法 講座,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憲法”, 學友書房(日本), 1960, p.50.

을 거절당하였다.

라. 宗教彈壓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서 “사람은 누구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이 권리의 자리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꾸는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한 방법으로 설교, 설법 등 각종 의식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밝힐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라고 천명하였다. 이와 관련,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宗教·信仰生活이 人權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

(1) 反宗教 政策

북한은 헌법에서 마치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듯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많은 외국전문가, 종교인들로부터 북한사회에 信仰과 宗教의 自由가 허용되고 있는 듯한 오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헌법 제54조는 “공민은 신앙과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規定한 바, 이는 바로 신앙과 종교를 구분하고 종교를 탄압할 수 있다는 法的 根據를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종교를 신앙과 구분, 迫害하려는 이유는 바로, 종교가 信徒로 조직되고 특정한 教理에 의해 결속된 집단이기 때문이다며, 이같은 특수조직은 공산주의 혁명과업 수행에 어려운 대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이 종교를 탄압하는 법률적 근거로는 刑事法도 한 몇 한다. 1975년 2월에 시행된 개정형법 제258조는 “종교에 관해서 행정적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同法 제257조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요구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종교에 관한 政治的 觀點도 종교탄압의 배경이 되고 있다. 즉, 북한의 최고지도자 金日成은 “종교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다 본질상 미신을 믿는 것이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 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고 착취,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또 근래에 들어와서는 제국 주의자들이 후진국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⁴⁸⁾ 이같은 맥락에서 各 宗教를 비난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⁴⁹⁾

즉,

- “불교는 봉건통치배들의 思想的 支配道具”
- “기독교는 피착취 근로대중의 해방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착취계급의 도구”
- “유교는 부르죠아사상과 함께 현시기 思想革命의 중요 대상의 하나.” 등이다.

48) 金日成 綜合大學 國家法 講座, 같은 책, p.51.

49) 북한, “국가사회체제”, 평양, 1960, p.180.

〈표 : 반 종교선전내용〉

區 分	解 說
宗 教	自然 및 社會的 힘이 사람들을 支配한다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그릇되게 반영된 意識形 態, 즉 인간의식에 현실이 환상적으로 歪曲 되어反映된 것이다.
基 督 教	現實世界에 대한 幻想的이며 왜곡된 초자연 적 힘에 대한 信仰에 기초하고 있다. 基督教 는 被榨取勤勞 大衆의 解放鬪爭을 抹殺하고 榨取制度를 永久化하기 위한 榨取階級의 精 神的 道具이다.
佛 教	佛教는 階級社會에서 大衆에게 가해지는 社 會的 고통의 원인을 階級的 壓迫과 榨取에서 찾는 대신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에 있다고 함으로써 지배계급의 榨取的 本性을 가리우고 인민대중의 鬪爭意識을 마비시키고 있 다. 오늘날 佛教는 共和國 북반부에서는 이 미 없어졌다.
天 道 教 (東學思想)	社會가 腐敗하게 된 원인을 인간의 道德的 타락에 귀착시키며 사회를 구원하는 길은 모 든 사람들이 東學思想을 믿고 自己修養을 하 여 道德的으로 완성하는데서 찾는 觀念論的 이며 宗教的인 社會歷史觀이다.

*북한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참조.

(2) 宗教抹殺 過程

북한은 사실상 공산화 초기과정에서부터 종교를 말살하기 시작했다. 우선 종교집회을 통제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종교선전을 방해했고 종교재산을 没收하였으며 종교인을 숙청하는 순으로 탄압했다.

이와 같은 종교탄압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알려지고 있다.⁵⁰⁾

194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북한이 전개한 기독교 특히 가톨릭에 대한 탄압을 ‘Catholic Korea’라는 책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49년 12월 反宗教運動이 북한당국의 지시에 의거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첫 단계로 教會가 폐쇄되고 1950년 1월, 성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체포와 함께 150명의 사제들이 處刑되었고, 그중 몇명은 실종되었다. 투옥된 기독교인의 운명은 김일성 치하의 정치범들과

50) 남북문제연구소, 앞의 책, p.44.

같은 것이었다. 18명의 교인들이 감방에 수용되었는데 한개의 감방이 너무 좁아서 눕지도 못하고 서로 등을 맞대고 자야 했다. 그리고 6·25動亂中에는 북한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다에 밀어 넣어 익사케하거나 지하 동굴에 처넣고 무차별 사격으로 학살하였다. 이로써 전쟁 말기에는 이미 기독교식 儀式이나, 活動이 모두 중지되었고 많은 가톨릭 信者들이 실종되었다.

그리고 1946년 3월 5일 발효된 ‘土地改革令’에 의하여 종교단체들의 재산, 불교 사찰, 교회 등은 1950년대까지 모두 다 無償沒收당했다. 여기서 몰수된 재산과 건물은 勞動黨 고위간부들에게 분배되기도 했고 일부는 휴양소, 유치원, 창고 등으로 利用되었다. 1948년 이전에는 평양에 거주하는 全住民의 약 6분의 1에 해당되는 30여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으나 이제 그들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종교집회 장소인 교회나 사찰 등이 6·25 당시 많이 소실되었고 그후 復元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교회나 사찰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3) 最近의 宗敎宣傳 實相

북한은 최근 종교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970년대 초 ‘남북적십자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될 당시부터 북한은 각종 종교단체들의 이름으로 對南宣傳用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1972년 8월, 남북대화가 정식으로 진행되면서 종교단체의 간부급이 代表資格으로 나타났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종교단체는 꾸준히 活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북한의 주요 宗敎團體로는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기독교도연맹’, ‘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천주교인협회’(1988. 6결성) 등이 있다.

북한은 각종 종교계의 건물들을 복원 신축했다고 선전한다.

북한의 선전에 의하면, 1981년 묘향산지역 開發計劃의 일환으로 불교사찰 ‘보현사’를 復元하였으며 기타 각 지역의 고찰들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1988년 10월과 11월, ‘장

충성당'과 '봉수교회'(등록된 신자는 모두 6,000여 명)를 건축했다고 한다. 그 외에 1983년과 1984년에는 성경과 찬송가(각각 10,000여 권씩)를 발간하고, 이조실록과 '8만대장경 해제본'을 번역 출판했다는 등의 선전도 하고 있다.

그리고 宗敎人이 있다는 사실을 선전한다.

불교의 경우, 比丘僧은 없고 帶妻僧 800여 명, 불교신자 10,000여 명이 있다는 것과 기독교인의 경우, 목사 30여 명(1972년 이후 신학강좌과정을 거친 젊은 목사 20명)과 가정교회 500여 개 그리고 신도 10,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선전한다. 심지어 각종 종교집회도 개최한다고 선전하고 있다.⁵¹⁾

그러나 이같은 종교선전은 아직도 정치선전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서 사실상 주민들에게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상태는 아니다. 북한을 脫出하여 망명한 자들이나 북한을 방문했

51) 평화문제연구소, 앞의 책, p. 73.

던 해외교포들의 證言에 의하면 북한의 실제적인 종교실상의 一面은 다음과 같다.

1988년 10월 설립한 평양 봉수교회는 필요시 선전용 예배를 위해 직장마다 1명씩 차출하여 참석시키고 있으며, 선발되지 못한 주민들은 예배 장소에 나타날 수 없다고 한다. 教人們은 聖經을 교회에 두고 다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社會安全部 요원들이 이들의 가택을 불시에 수색하여 성경이나 경전이 발각되면 압수, 소각, 문책한다고 한다.

그리고 종교행사를 當局의 지시없이 임의대로 진행하면 불법행사로 간주, 처벌하고 식량배급을 단절하며 또 벽지로 追放한다.

따라서 북한에는 아직도 자유로운 종교활동은 禁止된 상태라 하겠다.

특히, 북한에서 金日成 主體思想만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신봉하고 종교활동을 억제하는 각종 법률이 존재하는 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宗敎團體는 자체의 활동경비를 확

보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자유로운 선교·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한 교세확장은 고사하고, 참된 신앙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6. 強制勞動에 의한 人權侵害

勞動은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마련하고 理想을 추구하려는 정신적, 육체적 근로행위이다. 이같은 근로행위는 인간이 자기의 意思에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自由와 權利를 의미하며 또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의 신성한 권리라고 한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에서 ‘勞動의 權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동 선언 제23조는 ① 사람은 누구나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 권리, 公正하고 有利한 노동 조건과 실업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差別도 받지 않고同一한 勞動에 대해同一한 報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附合하는 생활을 보장해 주고 또 필요한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 수단으로 보충되는 公正하고 妥當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勞動組合’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유엔은 노동기구를 두고 노동자들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自由民主國家들은 이같은 유엔의 정신을 尊重하고 자국의 노동자들의 권리와 신장을 위해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협약권 등 ‘근로 3권’을 헌법으로 보장한다.

가. 勤勞의 義務化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북한은 법률상 노동을 個人的 권리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義務事項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이 노동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법률적 根據는 다음과 같다.

북한헌법 제69조는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그리고 同法 제27조에는 “근로자들은 모두다 로동에 참가하며,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한다.”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법 제33조에는 노동의 義務的 봉사시간을 매일 8시간으로 규정하였고 1975년 개정 형법은 노동을 형별로 간주, 犯法者 가 유죄(징역)판결을 받게 되면 勞動敎化刑을 당하게 된다. (1987년 개정형법 제21조도 같음) 同法 제61조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지장을 줄 목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全財產을 몰수하고 징역형이 終了된 이후에도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거권을 박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同法 제91조는 제품생산과 관련, “기술 규정, 표준조작법, 제작규격, 검사규정을 어겨 오작품(誤作品), 불합격품을 생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敎化勞動에 처한다.”라

고 규정했다. 1987년 개정형법 제78조도 上記 제 품생산의 規定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로동교 화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7년도에 새로 개정했다는 형법에서도 건축, 농업생산, 축산가공, 상품공급 등 각 분야에서 命令과 指示대로 하지 않을 경우는 형별로 다스린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 법 개정형법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등)

나. 強制勞動

북한에서는 住民들의 직업을 黨이 직접 배정하고 個人이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離職을 할 수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직장배치제도로 실업자가 發生하지 않는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은 不問에 붙이고, 黨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람들을 일터에 배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大單位 건설공사장이나 농장, 목장, 광산 등지에 집단으로

소위 ‘무리 배치’한다. 어떤 경우는 각 직장에서 無作爲로 차출하여 이와 같은 힘든 일터에 배치 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장배치하는 절차와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黨의 계획에 의거하여 취업대상자가 市·道行政委員會의 노동부(노동자의 경우), 또는 간부부(사무원 및 간부직원의 경우)를 통하여 직장 배치장 혹은 소개장을 發付받아서 취업하게 되어 있다.⁵²⁾

이렇게 하여 배치된 장소에서는 작업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최대한 發揮해야 한다. 노동을 게을리하거나, 불평 불만을 表示하거나, 懈業을 하게 되면, 그 즉시 형법에 의한 범죄자로 處罰된다.

북한은 노동자들에게 보다 많은 勞役을 촉구하기 위해서 每 작업장마다 노동을 선동하는 구호 즉, ‘속도전, 돌격전, 초과달성, 200일 전투, 빠

52) 남북문제연구소, 앞의 책, p.53.

은기 쟁취운동' 등을 부착해 놓았으며 소위 '선전선동 소조'(노래와 춤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수인원의 악단)들이 노동의 분위기를 고조하는 등 노동의倍加를 다그친다.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작업하는 시간은 9~12시간이며 군인들의 작업시간은 무려 16시간이나 된다. 북한에서 실제로 勞動現場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彙順者들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어느 採石場의 노동자들은 黨이 지시한 노동의 양 즉, '1일 1000삽'의 할당량을 채운 후에야 휴식을 잠시 취할 수 있다고 한다.⁵³⁾

53) 남북문제연구소, 앞의 책, p.54.

〈표 : 시기별 노력경쟁운동〉

口 號	發 起	動 機	備 考
千里馬運動	1956. 12	당 중앙위 확대전 원회의에서 집단적革新運動으로 전개 할 것을 결정.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전개된 社會主義 노동 경쟁운동
青山里精神 青山里方式	1960. 2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 靑山里協同農場 현지지도 때 강조	노동력의 효율적 통제 및 生產性向上運動
速度戰	1974. 2	당 5기 8차 전원 회의에서 당 중앙의 공식 口號로 채택	작업의 速度와 생산의 質을 동시에 요구
숨은 영웅 模範 따라 배우기 운동	1979. 10	백설희 등 4명(植物學研究所)의 과학자들과 노력영웅 칭호 수상자들을 본받도록 하는 운동	자발적 노력을 강요하는 大衆動員運動

口 號	發 起	動 機	備 考
80年代 速度創造運動	1982. 7	김책 제철소(金屬部門)에서 발기	경제 성장의 부진 타개를 위한 계기 조성 및 金正日의 지도 역량을 경제 성과로 실증시키는 새로운 노력경쟁운동
새로운 90年代 速度創造運動	1990. 1	金日成이 新年辭에서 제시	당 조직과 일꾼들을 비롯, 전주민 労力動員 분위기 조성 및 청년학생들의 견인차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 社會主義體制의鞏固化 도모

*주 : 당·정·군 관료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국노동·금요노동·농촌지원 등의 명목으로 연간 4~14주 노력동원 실시

(통일원, 「북한개요」 1991, p. 263)

다. 勞力動員

북한 주민들은 주어진 근무 이외에 課外勞動을 해야 한다. 그 대상에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은 물론, 여성이나 학생들도 포함된다.

북한은 이미 女性的 노동력을 동원하는 조치로서 ‘男女平等權 法令’을 제정하고 여성들을 노동 현장에 集團的으로 참가시켜 왔다. 신체가 건강한 모든 젊은 남성은 兵役에 동원되기 때문에 16세~30세 정도의 민간노동자 90%가 여성이다. 가정을 가진 주부라도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는 자녀와 떨어져서 共同作業場에 나가 노력동원에 참가한다.⁵⁴⁾

북한은 청년학생들의 노동력을 많이 동원한다. 학생들 즉, 高等中學校學生이나 大學生들은 1년에 1개월씩 완전히 노력봉사에 동원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큰 기술이 필요치 않은 단순 노동 현장, 농장, 광산, 건설공사장 등에 동원되며 夜間工事場에도 주로 동원된다. 이들 학생들은 上記의 노력봉사 이외에도 1년에 150일 정도는 생 산현장에서 노동해야 한다.

북한은 어린 人民學生들도 노력동원에 참가시

54) 남북문제연구소, 앞의 책, p.85.

킨다. 특별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민학생들은 연간 2~4회는 노력동원된다. 이들은 農繁期에는 농장에 동원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철수집, 이삭줍기, 토끼기르기, 학교주변의 나무심기, 도로정비 등에 동원된다. 그리고 고등중학교 이상 학생의 경우, 이른바 ‘社會義務勞動制’(1959. 3. 내각결정 제18호)에 의한 강제 의무노동에 참가해야 한다. 이들은 때에 따라서는 4~8주간의 노동에 집단으로 동원된다. 이때는 寢食을 스스로 해결한다. 이들은 지도교원의 책임하에 봄, 가을 등 농번기마다 농삿일에 거의 定例的으로 참가한다. 심지어 가을 추수시는 10월 한달간 농장에서 농삿일에 참여한다.

특히 전문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들은 연간 12주~14주 동안 勞力動員되며 그 이외에도 소위 ‘現場學習’이라는 명분하에 중노동이 필요한 광산, 건설공사장 등에 동원되고 있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을改善하기 위해 주장할 권리가 없다. 북한의 헌법이나 형법, 노동법 등은 이들 노동자들에게 義務的

으로 노동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을 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조항은 없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은 唯一한 정치조직인 勞動黨의 소속 기관인 ‘농업근로자동맹’이나 ‘직업총동맹’에 의무적으로 加入해야 하며 黨의 정책과 생산과업을 달성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자기들의 權益을 위해 항변할 자유나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이와 같은 이유로 생산을 소홀히 하거나 파업, 태업, 시위, 항변하면 刑法에 의하여 엄중한 범죄자가 되고 교화노동에 처한다.

이와 관련된 형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1987년 5월에 개정된 북한의 형법 제103조는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應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혹심하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년 이하의 勞動敎化刑에 처한다.”고 規定, 집단적 示威行動을 금지했고 同法 제105조는 “사회적 혼란과 국가에 대한 不信任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집단적 抗議를 불법으로 처리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주민들은 黨과 國家 그리고 革命과 生產建設을 위해 노동을 바쳐 충성을 다 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貴重한 노동의 자유와 권리를 行使할 수 없다.

7. 結 言

지금까지 소개한 북한의 人權實相은 극히 제한된 자료들을 근거로 찾아진 사실들이란 점에서 氷山의一角에 불과하다 하겠다. 만약, 북한사회가 開放되면 이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인권탄압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북한사회가 개방되고 갖가지의 인권탄압실상이 白日下에 드러나고 또 그것이 해결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요소들이 가로놓여 있다. 그것은 金日成父子世襲體制 즉, 혁명일변도의 唯一閉鎖體制이며 나아가 민주의식의 토양이 형성

되지 못한 상태 등이다.

특히, 북한의 개방화에는 동구공산권 각국들의 개혁·개방화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指導層의 개혁의지와 부단한 민주화투쟁이 필요하다. 즉, 동구 각국의 개혁·개방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온 民主主義意識과 끊임없는 민주화투쟁 그리고 이를 促求하는 국제적 압력과 맞물리는 가운데에서 이룩된 것이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을 시발로, 1977년에 257명의 체코 지식인들이 連名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이른바 ‘7·7현장’을 선포하고 민주화를 촉구하였으며 1978년 4월에는 불가리아 지식인들이 反體制的 비밀조직을 결성하고 ‘78선언’을 발표하면서 민주화를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동구 각국들에는 이미 공산화되기 이전부터 민주주의와 인권사상이 形成되어 있었으며 공산화 이후에도 비공산주의적 정치조직들의 활동이나 언론, 출판, 집회 등의 자유가 暗暗裡에 신장되고 있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토양 위에서 외부의 개혁·개방화 압력이 작용하여 마침내 民主化가 이룩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事情이 다르다. 日帝 植民地 支配에서 벗어나자마자 소련군의 점령하에서 공산화되었고 또 김일성 1인독재, 혁명일변도의 유일독재체제가 굳어짐에 따라 人權思想은 고사하고 민주주의의식은 不毛狀態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동구사회의 변혁과 같은 현상이 북한에서 쉽게 발생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인류사회의 平和와 福祉를 실현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世紀的인 추세로 발전하고 또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지난날 共產革命이라는 可恐할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했던 공산주의국가들은 저마다 體質改善을 하여 개혁 및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또 북한 역시, 김일성의 주장처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게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북한이 人間中心의 정치를 요구하는内外의 압력 속에서 개혁·개방화의 물결을 逆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지난날 그토록 반대했던 ‘남북한유엔동시가입’을 수용했으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과 북이 화해하고 불가

침하며 교류·협력을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결국 북한의 변화, 개혁·개방은 必然的인 과정이며 그 속도는 오히려豫想보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民主化, 人權問題 등도 빨리 해결될 것이다.

이는 곧 우리의 宿願인 平和統一의 이음쇠가 되고 민족의 번영 발전의 碩石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날이 하루 속히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北韓의 人權實相 (통일총서 / 17)

1991年 1月 20日 初版發行

1992年 2月 25日 2版發行

發行處：**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踰2洞 山73-13

電話：901-7123~4

(통연 92-2-15)

